

국회에서 의결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권한대행
국무위원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
최 상 목 인

2025년 3월 18일

국무총리 직무대행
국무위원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
최 상 목

국무위원
행정안전부
장관
(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)

● 법률 제20828호

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법률 제19815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위원회 및”을 “위원회, 실무협의회 및”으로 한다.

-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<법제처 제공>